

#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이현찬 의원 (대표) 발의)

의안 번호	673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 : 2019년 5월 24일

발 의 자 : 이현찬 의원 (1명)

찬 성 자 : 김동식, 이광성, 최정순, 이성배,  
한기영, 유 용, 김경영, 이동현,  
김제리, 김상진, 박기재 의원  
(11명)

## 1. 제안이유

청년의회가 연1회 개최되고 있으나, 형식적인 행사에 그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서울 시정에 청년의 참여를 정례화하고, 시정에 반영된 청년 제안 정책 등의 사후관리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

## 2. 주요골자

청년의 시정 참여를 정례화하고, 시정에 반영된 청년 제안 정책 등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(안 제10조)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해당사항 없음.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.

다. 기 타 :

(1) 신·구조문대비표 참조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1항 중 “시장은”을 “시장은 시정에 대한”으로, “확대하고”를 “확대하고, 제도적으로 정례화하며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”를 “보장하며, 시정에 반영된 청년 제안 정책 등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평가할 수 있다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0조(청년의 참여 확대 등) ① <u>시장은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</u> 민주시민으로서의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시장은 서울시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 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<u>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③ ~ ⑤ (생략)</p>	<p>제10조(청년의 참여 확대 등) ① <u>시장은 시정에 대한 -- 확대하고, 제도적으로 정례화하며</u>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<u>보장하며, 시정에 반영된 청년 제안 정책 등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평가할 수 있다.</u></p> <p>③ ~ ⑤ (현행과 같음)</p>